

##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2021.07.01.시행)

관세청은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세부 처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임시개청 신청 및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적용 대상

####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 적용대상: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FTA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2. 관세 양허대상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 적용대상: 관세 양허대상 수출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근거 법령
  - 관세법 제232조의2 제1항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원산지 고시) 제16조 제1항

#### 3.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인이 재발급 신청하거나, 정정 발급 신청하여 발급심사 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

## II. 업무처리 지침

### 1. 임시개청 신청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날의 직전 개청일까지 세관장에게 임시개청 신청
- (신청방법) 관세청 유니패스 상 “전자신고” 탭에서 신고서 작성 → 공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청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은 임시개청 신청한 시간에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 2. 심사 절차

- 세관장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당일 발급 승인 여부 결정
- 신청인의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이 필요하거나 현지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당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세관장은 심사절차가 완료되면 전자통관시스템에 임시개청 결과 등록(자동심사 처리된 경우 제외)

### 3. 임시개청 수수료

- 수출신고와 동일한 임시개청 수수료 적용되며, 임시개청 결과가 등록된 건에 대해 신청인이 수수료 납부  
- 기본 수수료 : 평일 1,000원, 휴일 3,000원

구분	00:00~06:00	06:00~18:00	18:00~22:00	22:00~24:00
시간당 수수료	1,750원	750원	1,200원	1,750원

- 동일 신청인이 다수 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1건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 1건으로 인정하여 수수료 부과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지침(2021.06.29제정)

## | Contact



차재영 관세전문가

T 02-6929-3464  
E jycha@esein.co.kr



민경호 관세전문가

T 02-6011-3106  
E khmin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